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내

○ 법 률 : 제2011-11037호

공포일자 : 2011. 8. 4

담당부서 : 소방제도과(02-2100-5334)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nema.go.kr)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 · 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개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제5조 개정)

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등)

마. 건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 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바.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 률 : 제2011-110호

예고기간 : 2011. 8. 19 ~ 23

담당부서 : 소방제도과(02-2100-5334)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장(www.nema.go.kr)

○ 개정이유

건축법령의 용도변경이 신고제('99. 5. 9)에서 허가 또는 신고제로 개정('06. 5. 9)됨에 따라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의 변경을 가져오는 허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방관서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건축물에 적합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확대 조정(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1) 종전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소방시설이 변경되어도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변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면이 있었음
- 2)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이 변경되는 용도변경의 허가사항을 건축허가동의 등의 대상에 포함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개선함

나.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1조)

종전까지 혼재 사용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등”的 용어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 및 업무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 기준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영업정치처분의 합리적 조정 (안 제19조, 제28조, 제34조, 제38조)

행정처분 기준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처분만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중복된 처벌규정을 삭제하여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과징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35조제1항)

- 1) 영업정지의 대체 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그 요건이 까다로워 과징금 제도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 과징금의 처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과징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안 제36조 단서 신설)

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제외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함

바.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44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내

- 법 률 : 제2011-11015호

- 공포일자 : 2011. 8. 4

-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02-2110-8356)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itm.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여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건축물 대부분이 시공할 때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조립식 건축물을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민 및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11-209호

예고기간 : 2011. 8. 25 ~ 9. 14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02-6922-0923)

전문참고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개정이유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방호조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 확대(안 제26조의10)

- 1) 서비스업의 경우 현행 관련 직능단체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질 높은 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종전 관계 전문 기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관계 전문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 2) 서비스업의 직능단체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 종전 관계 전문기관을 고용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명확히 함
- 3) 서비스업의 직능단체 등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

나. 방호조치 대상의 합리적 조정(안 제27조, 안 별표 7)

-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 등으로 프레스 등 17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다발 여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수준 및 주요 선진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대상을 조정할 필요
- 2) 현행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신고 제도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해가 다발하는 기계·기구로서 특정위험 부분에 대한 안전보건방호조치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계·기구를 중심으로 방호조치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원심기 등 6종의 위험기계·기구 등을 방호조치 적용대상에 포함
- 3) 재해다발 여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수준 및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안전보건방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계·기구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대상의 합리적 조정(안 제28조 및 제28조의2)

- 1) 현재 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11종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기계에 대한 제조·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2) 위험도가 매우 높고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제조·수입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안전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계류(이동식) 등 2종을 안전인증 대상(8종) 적용대

상에 추가하고 산업용 로봇 등 12종을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 추가하며 방호조치 대상에 포함된 원심기·공기압축기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

- 3) 기계별 유해·위험도, 안전보건조치 수준 및 주요 선진국의 규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및 실효성 제고

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 확대(안 제33조의2, 안 별표 1)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분야 제외) 제도가 현재 2개 업종만 시행되고 있어 다른 주요 산업재해 취약업종이 누락되어 있으며, 현재 제외대상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상가동 되면서 5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업장이 많아 정상가동 이전의 근로자수(5명 이상)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
- 2) 업종별로 재해 빈도, 재해 강도 및 재해자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8개 업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적용대상 사업규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을 “전기계약용량”으로 변경하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
- 3) 자동차제조업, 철강업 등 산재 취약업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하고, 동 제도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재다발 업종의 산업재해 감소 및 동 제도에 기여

마. 지도사 시험과목 보완(안 제33조의14, 안 별표 12)

- 1) 안전관리·조직관리·생산관리에 대한 지식과 산업심리와 관련 능력 및 안전과 보건에 대한 지식 등이 요구되어 지도사 시험과목에 이를 보완할 필요
- 2) 지도사의 과목에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과 산업심리학 과목을 공통필수Ⅲ으로 추가하고 산업 안전지도사는 산업위생개론을, 산업위생지도사는 산업안전개론을 시험과목에 추가하고 이와 중복되는 과목을 삭제함
- 3) 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사업장 등 업무위탁자에 대한 서비스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바. 도급인의 위생시설 협조의무에 대한 적용범위 마련(안 별표 1)

- 1) 법률 개정(11.7.25.)으로 법 제29조제8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의 적용사업의 범위를 정함
- 2) 법 제29조제8항 신설에 따라 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협력업체(하수급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5명 미만 사업에 적용하도록 함
- 3) 법령상 규정된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의무 등 안전·보건조치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사.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4의2)

- 1) 법률 개정(11.7.25.)으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
- 2) 부과대상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과일수별로 과징금 부과기준 정함
- 3)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아.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 1)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 2)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여 정기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 ‘1회당’에서 근로자는 ‘매분기/1명당으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MSDS 작성·제공의무를 부과하고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에게는 MSDS 비치 및 근로자 교육 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함
- 3)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 및 감독의 실효성이 중대될 것으로 기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제2011-210호

예고기간 : 2011. 8. 25 ~ 9. 14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02-6922-0923)

전문참고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개정이유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설정(안 제30조의3)

- 1) 법 제29조제8항 신설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
- 2) 법 제29조제8항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안전보건규칙에서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정함
- 3) 해당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조정(안 제46조)

- 1) 영 별표 7(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등)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계·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정하기 위함
- 2) 영 별표 7에서 정한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구체적으로 정함
- 3) 위험한 기계·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확대(안 제58조의2, 제73조)

- 1) 다른 법률의 검사 또는 점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검사를 면제하기 위함
- 2)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전부 면제하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 면제
- 3) 타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안전검사를 면제하여 이중검사를 배제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편 또는 부담 해소

라.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면제 주기 개선(안 제73조)

- 1) 현행 건기법에 따른 검사(2년에 1회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어 타워크레인 검사는 사실상 건기법에 따라 2년에 1회만 실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 2) 타워크레인의 건기법상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기의 산안법상의 안전검사만을 면제하여 매 6개월마다 타워크레인 검사를 받도록 함
 3) 안전검사의 실효성 확보로 타워크레인 마스트, 볼트 등의 자체 성능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마. 위험기계·기구 제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확대 및 지원 등록취소 절차 보완(안 제77조의3, 제77조의4)

- 1) 기계·기구의 제조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한 자의 등록취소 및 지원금액의 환수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
- 2) 제조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내용에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 등을 추가하고 등록지원기관은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3) 정부지원 내용의 합리적 조정 및 지원금액의 환수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합리성 제고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간소화 등(안 제121조제1항)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이 모든 제출대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업주의 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낮으며 법 제48조제1항과 제2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그 대상이 상이하므로 그 대상에 맞게 계획서의 내용을 달리 하고 각각에 따른 제출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비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서류를 실효성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장 부담 경감 및 제도 활성화 기대

사.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1)

- 1) 환산재해율 산정 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 제외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가중치 부여 회피를 위한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 2)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를 10배에서 5배로 완화되며, 사고성 사망재해는 모두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 판결 등에 따른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부여함
- 3)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가 낮아져 기업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체의 무혐의 유도 등의 폐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안 별표 5, 6, 6의3, 10, 10의2)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최소면적)이 실효성 없이 영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지정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50m² 이상) 삭제

자. 행정처분 취소 기준 마련(별표 20)

- 1)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 등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함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이 필요
- 2)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 등에 대해 일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지부 등의 위반행위에서 해당 지부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화
- 3) 지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정기관 업무수행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전대차의 법적성질



글 _ 박기동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만해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언론중계위원회 선거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해(満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02-595-9191)

Q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629조), 이는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예컨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은 임대사업자인 태영산업이 부도로 인하여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를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에 대한 차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통지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가 임대인인 태영산업에 대하여 배신행위 내지 신뢰관계의 파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태영산업이 제3자에게 원고들에 대한 차임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목적으로 적법한 임차인 내지 전차인으로 인정하고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참조).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55121 판결 참조). ♦

전력기술관리법령 유권해석(지식경제부) 사례

- 본인은 전기부분의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 2007년 12월 28일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전기공사기술자격수첩을 발급받았습니다. 등급은 특급입니다.
- 전기공사기술자격수첩이 전력기술인협회에 서도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호 교차 인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우선, 풍사협회와 전력기술인협회의 경력에 대한 상호 교차인정에 대하여는 각 협회에 경력신고를 하고, 신청인이 발급받은 경력학번서를 서로 다른 협회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경력에 대하여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상호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그러나, 「전기공사업법」의 경력수첩과 「전력기술관리법」의 감리원수첩에 대한 “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각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감리원의 자격)의 개정(2006.6.22, 시행일 2006.6.24)으로 현재 시장에서 감리원수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가 아닌 경우 특급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 2(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의 개정으로 현재 시장에서 전기 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기·소방·통신·건설분야 관련법령에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개선한 사항이므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1. 8)

- 저는 자체 공업직(전기직류) 공무원이며 전기공사기사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전력시설물 설계는 기술사가 원칙이고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전력시설물 설계는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자체의 전기공사 중 소용량 공사(5kW미만 신설공사, 단순유지보수공사 등)를 설계(공사비 내역, 시방서, 도면설계 등)하려면 설계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기관련 기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 면허 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따른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설계사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1. 18)

3. 당시에서 시행하는 가로등, 신호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전기)발주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 1) 가로등, 신호등설비 계약전력(50kW), 수전전압 600V이하의 공사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항 2호 및 시행령 제20조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에 의거 1호의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을 공사로서 감리발주를 아니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 일반용전기설비는 한전에서만 시행하는 공사인지 여부?

4. 자족경제부 고시 제2009-51호에 의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선정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참여 책임감리원의 경력사항 중 일부가 경력연수 100%를 인정하는 감독경력으로 경력확인서에 신고 되었으나, 평가(확인)결과 감독경력이 아닌 시공경력으로 확인된 경우 경력을 감독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질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공사감리를 맡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따른 “가로등, 신호등설비 계약전력(50kW), 수전전압 600V이하의 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되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로등, 신호등 설비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인 경우에는 자가용전기설비가 되는 것으로 공사감리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일반용전기설비는 한전 이외의 사용자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1. 11)

- PQ고시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관련된 경우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이 발급받은 감리원경력확인서에는 감독경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PQ평가 결과 감독경력이 아닌 시공경력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경력에 대한 감독 또는 시공경력으로의 인정여부는 PQ고시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해석할 사항입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1. 11)